**하도급 거래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지침**

**2022. 04. 01. 제정**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두올(이하 “당사”라고 함)이 일정규모 이상의 하도급에 대한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 등을 스스로 사전에 심의하게 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 위반행위의 사전예방을 위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내부 심의위원회 설치·운용 실천사항)**

**1. 내부 심의위원회 구성의 적절성**

가. 내부 심의위원회는 하도급 관련 업무담당 인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의 임직원으로 구성하되 필요 시 사외이사 등 외부전문가를 선임할 수 있다.

나. 기존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운용을 위해서 설치된 심의기구 등이 가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내부 심의위원회로 운용할 수 있다.

**2. 내부 심의위원회 운용의 실효성**

가. 내부 심의위원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현안 발생 시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

나. 내부 심의위원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서면 계약서 발급 의무 준수 여부

2) 내국신용장 개설 의무 준수 여부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금지 위반 여부

4) 물품 등의 구매강제 금지 위반 여부

5) 경제적 이익의 부당 요구 금지 위반 여부

다.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기업 등록 · 취소 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를 사전 심의 한다.

라. 내부 심의위원회는 협력기업 미선정 또는 등록 취소에 대한 이의신청 건을 심의한다

마. 필요 시 관련 협력기업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 시 익명성을 보장한다.

바.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취한다.

사. 내부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된 문서는 심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22년 0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지침의 변경)**

본 지침의 변경이 필요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의 내규에 따라 변경한다.